

붙임 1. 기타 유의사항

- 총 사업비의 부가세(VAT)와 자가측정비용은 사업장 부담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 - ※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보완 시 사업 신청 반려
-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
 - ※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, 보완 후에도 미흡할 시 사업 신청 반려
-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체결 내용(계약서 사본 등)을 진도군에 제출하여야 함
 - ※ 1개월 이내 기간 내 계약체결기간 연장 가능(1회)
 - ※ 정당한 사유 없이 미체결 시 사업승인 취소
- IoT게이트 웨이 및 VPN 2개 이상 지원 신청 시 명확한 기재 후 2개 이상 설치 사유서 제출
-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
 - ※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 승인 취소
-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(방지시설 전단*과 후단 각각) 및 배출구 설치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” (2023. 6.)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
 - ※ 가이드라인 개정 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

-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2024. 11. 30. 전에 제출
-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후 방지지설 및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
 -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보완 후 지급
- IoT 측정기기 신호가 IoT 관리시스템으로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
- 폐업,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지설,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**보조금 환수**
-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진도군 의견을 따름